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우리 프랭클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2. 효력발생일 : 2022.10.26

3. 정정사유

- ①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- ② 이익분배조항 변경(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)
- ③ 증권 거래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 기재
- ④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

<집합투자규약>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|---|--|
|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| 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| 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 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|
| 오기 정정 | 제23조(운용행위 감시의무 등) ④ <생략> 6.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| 제23조(운용행위 감시의무 등) ④ <좌동> 6.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|
| 매매, 평가 이익 유보 | 제33조(이익분배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<추가>한다. <신설> | 제33조(이익분배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|

<투자설명서>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기준일자 변경에 따 른 업데이 트 | 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제3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, 제4부. 1. 집합 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| 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제3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, 제4부. 1. 집합 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
| 증권 거래 비용 및 기 타 금융비 용 기재 | 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<신설> | 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증권 거래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 기재 |
| 이익분배조 항 변경(매 매 및 평가 이익 유보) | 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 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 이 경우 수익 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 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 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 | 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 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"零"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 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 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 1)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 산의 평가이익 2)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 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|

<간이투자설명서>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준일자 변경에 따 른 업데이 트 | 투자실적추이, 운용전문인력 - | 투자실적추이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